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선 발 기 준</th></tr>
<tr><td>선발대상</td><td>○ 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·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
※ 선원가족의 범위: 배우자, 자녀, 부모
단, 선원이 손자·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(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)
○ 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○ (성적기준) 대 학 생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5이상(단 1회에 한하여 2.0 이상 가능)
고등학생 : 성적무관</td></tr>
<tr><td>소득기준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기준금액</th></tr>
<tr><td>1학기</td><td>월 4,685,000원 미만(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※ 단,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%씩 가산 적용</td></tr>
<tr><td>2학기</td><td>추후공지(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신청기간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접 수</th><th>선발시기</th><th>선발횟수</th></tr>
<tr><td>1학기</td><td>3월 9일 ~ 4월 10일</td><td>5월</td><td rowspan="2">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</td></tr>
<tr><td>2학기</td><td>9월 1일 ~ 9월 30일</td><td>10월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선발인원 및 금액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1학기</th><th>2학기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고등학생</td><td>120만원</td><td>30명</td><td>30명</td><td rowspan="2">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>대 학 생</td><td>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</td><td>108명</td><td>78명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선 발
제외대상</td><td>○ 학비(수업료)를 면제 받는 경우
○ 고등학생 :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
○ 대 학 생 :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
○ 선원법(제3조) 적용 제외 선박
-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
- 호수, 강 또는 항내(港內)만을 항행하는 선박(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)
-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
-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(艀船)(다만,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)
○ 선박소유자
○ 관공선,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
※ 단,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(용역)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>○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(장학금 반환)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
</table>

구 분	선 발 기 준
2020년 1학기 제출서류	○ **소정양식(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 각 1부** ① 장학생선발신청서(학생용) ② 장학생선발신청서(사업장확인용) ③ 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○ **월평균급여증명서류 : 1부** - 20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 : 외항상선, 원양어선, 해외취업상 · 어선(회사 직인 필) -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: 내항상선, 연근해어선(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) ※ 순직 · 장해선원 및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○ **승무경력증명서(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) : 1부** - 연근해어선 부원 :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(해양경찰서 발급) ※ 순직·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· 하선 공인을 받을 경우 생략가능 ○ **가족관계증명서 : 1부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** ※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○ **재학증명서 : 1부(2020년도 3월 이후 발급분)** ○ **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: 1부(2020년도 1학기 발급분)** ○ **성적증명서 : 1부(직전학기 성적 / 대학생만 해당)** ※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생략 ○ **기타서류(해당자에 한함)** - 순직사실확인서류(순직선원만 해당) - 장해등급증명서류(장해선원만 해당) - 기타: 기초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
선발순위	○ **제1순위 : 순직선원 유가족** ○ **제2순위 : 장해선원 가족** ○ **제3순위 : 신규 신청 선원가족** ○ **제4순위 :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** ○ **제5순위 :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** ○ **제6순위 : 기초수급자 선원가족** ○ **제7순위 : 차상위계층 선원가족** ○ **제8순위 : 한부모가정 선원가족** ○ **제9순위 : 그 밖의 선원가족** ※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↓, 월평균급여↓, 승선경력↑, 고학년 순으로 선발
접수방법	○ **방문 및 우편 접수 (전화: 051-996-3647, 팩스: 051-463-8124)** - 부산: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) - 포항: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,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) - 제주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, 한림항선원회관 2층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) - 목포: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,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)